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83

발의연월일: 2020. 9. 15.

발 의 자: 윤준병・김민철・오기형

어기구 · 이해식 · 허종식

최종윤 • 인재근 • 장경태

김주영 · 강선우 · 위성곤

송옥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구주택총조사(2015)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 9천 호이고,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.3%인 31만 4천 호에 달하고 있음.

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,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아울러 「농어촌정비법」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2일부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특정빈집(붕괴·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,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,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, 주변 생활환경 보전

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)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시행되었으나, 그 외의 지역은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임.

이에 시장·군수등이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하고, 빈집정비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하며,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3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빈집정비에"를 "2년 단위의 빈집정비에"로, "시행할 수 있다"를 "시행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빈집이나"를 "빈집정비계획의 수립· 시행을 위하여 빈집이나"로, "실시할 수 있다"를 "실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중 "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"을 "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.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제2장제2절에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1조의3(빈집에 대한 신고 등) ① 누구든지 빈집을 제11조제1항제1 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·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

을 따른다.

- ② 시장·군수등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, 정비,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하며, 그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행정절차법」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빈집정비계획의 수립) ①	제4조(빈집정비계획의 수립) ① -
시장·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	
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	
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	
하는 <u>빈집정비에</u> 관한 계획(이	<u>2년 단위의 빈집정비에</u>
하 "빈집정비계획"이라 한다)을	
수립· <u>시행할 수 있다</u> .	시행하여야
	<u>한다</u> 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생 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5조(빈집등 실태조사) ① 시장·	제5조(빈집등 실태조사) ①
군수등은 <u>빈집이나</u> 빈집으로	<u>빈집정비계획의 수립·</u>
추정되는 주택(이하"빈집등"이	시행을 위하여 빈집이나
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	
의 사항에 관한 조사(이하"실	
태조사"라 한다)를 <u>실시할 수</u>	
<u>있다</u> .	<u>실</u>
	시하여야 한다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1조(빈집의 철거) ① 시장·군	제11조(빈집의 철거) ①
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	

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"라한다)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빈집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<u>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</u><u>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</u>해가 되는 경우

<신 설>

<신 설>

② ~ ⑥ (생 략) <신 설>

1. (현행과 같음)
2.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

- 3.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있는 경우
- 4.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경우
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 제11조의3(빈집에 대한 신고 등)
 ① 누구든지 빈집을 제11조제1

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 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 장·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을 따른다.

② 시장·군수등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, 정비,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도하여야 하며,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행정절차법」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